

『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5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6월 3일

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황 필 섭

나. 제안이유

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정비하고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 규정(안 제4조).
- 시설 이용료 및 이용의 금지 규정(안 제5조, 안 제6조).
- 위탁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(안 제9조, 안 제10조).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.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44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조항을 개선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체험, 교육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선산문화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3조에서 문화의 집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고,
- 안 제4조에서 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 규정을 두었으며,
- 안 제5조, 안 제6조에서는 시설 이용료 및 이용의 금지 규정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9조, 안 제10조에서 선산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·관리 및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1997년 12월 29일 제정된 「구미시선산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」의 사용료 환불규정 등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재 선산문화의 집 업무 및 기능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시민에게 보다나은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